

#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 I. 출장 개요

### 1. 출장목적 :

- 일본의 집락영농 관련 정책 추진실태 및 사례조사

### 2. 출장자,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출장자: 박문호 연구위원
- 출장기간 : 2015. 8. 25.~8. 29. (4박 5일)
- 출장지: 일본 동경도 일대
  - 동경, 쓰꾸바시, 토치키현(모테기정, 나스가라스시)

### 3. 주요 조사 내용

- 일본의 집락영농 육성 정책 동향
  - 정책의 추진경과 및 지원 정책
  - 향후 공동경영체 육성 방향
  - 주요 제도·정책 추진내용
    - “경영기반 강화 촉진법” 및 관련 제도
    - 생산기반정비, 농지유동화, 농기계 이용 효율화, 경영체 육성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 정책지원시스템
    - 도·도·부·현 각급기관의 기능과 역할
- 집락영농 유형별 실태와 운영사례
  - 집락영농의 유형별 현황 및 실태
  - 미맥중심형, 복합화형, 다각화형 등 사례
    - 동경도 일대

#### 4. 주요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숙박
8. 25 (화)	서울 (김포) JL092	동경 (하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0 김포공항 국제선 약속</li> <li>• 김포출발(12:05) → 하네다도착(14:15)</li> <li>• 전문가 협의회: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관계자 主任研究官 樋口倫生 (하구찌 토모오)등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1-1 中央合同庁舎 4号館9階 03-6737-9079(직통)</li> </ul>	동경
8. 26 (수)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농림수산물성 농림수산물정책연구소 방문 〒100-001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1-1中央合同庁舎4号館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企画広報室交流情報課長 上野 忠義(うへの ただよし) TEL : 03-6737-9006 FAX : 03-6737-9098 E-mail : uenotada@affrc.go.jp</li> <li>• (14:00-16:00) 농림수산물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 집락영농, 조직경영체육성 지원부서 방문</li> </ul>	동경
8. 27 (목)		도찌기현	<p>事例調査(栃木県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10:00) 우수 집락영농 현장 방문1 : 시정촌 관계자 및 집락영농 관계자 미팅</li> <li>(1)農事組合法人そばの里まぎの(10:00~12:00)</li> <li>• (13:30-16:00) 우수 집락영농 현장 방문2 : 시정촌 관계자 및 집락영농 관계자 미팅</li> <li>(2)農事組合法人アグリファーム大桶; 那須烏山市役 所にて)</li> </ul>	동경
8. 28 (금)		쓰쿠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중앙농업총합연구센터 방문 農業環境技術研究所の5階 571号室 国立研究開発法人農研機構(農業食品産業技術総合研究機構) 中央農業総合研究センター 農業経営研究領域 「ビジネスモデル」プロジェクト担当 上席研究員 博士(農学) 高橋明広(다카하시 아키히로) TEL : 029-838-8875, 090-5512-0949</li> </ul>	쓰쿠바
8. 29 (토)	동경 (하네다) JL093	서울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조사 및 서점 방문</li> <li>• (15:40)하네다출발 → (18:00) 김포도착</li> </ul>	

## 5. 주요 면담자

면담자	기관명	직위	연락처
구마끼노리오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경영전문관	03-6744-0576
우에노 다다요시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교류정보과장	03-6737-9006
마쓰모토 히데가스	도치기현 경영기술과	계장	028-623-2317
다카하시 아키히로	중앙농업총합연구센터	상석연구원	029-838-8875
기쿠지 요시오	나스가라스시 농정과	농정담당관	0287-83-1231

## II. 주요조사내용

### 1. 일본의 집락영농 육성 정책 동향

#### ○ 정책의 추진경과

- 1960년대 후반 이후: 몇 개의 현에서 집락영농의 조직화를 지원
  - 소규모겸업농가지역 및 중산간지역에서 집락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조직이 설립됨
- 1990년대에 들어와 집락영농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도입
  - 1992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신농정)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체」에 개별경영체와 조직경영체의 양립방향 제시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집락영농을 「과도적 존재」로서 위치 설정, 대구획포장정비로 농지집적(30%이상)의 요건으로 조직화 진행(기계설비 90% 보조), 소수 니나이테 중심의 전작수탁조직이 설립(전작지의 단지화)
- 2000년대 몇가지 요건을 갖춘 집락영농을 니나이테로 설정
  - 2002년 「쌀정책대강」, 2004년 「쌀 정책개혁」에 집락영농중 일원적 경리가 이루어지며, 일정기간내 법인화 하는 등의 요건을 전제로 「집락경영체」를 경영주체로 인정, 정책적 육성 도모
  - 2005년부터 「집락영농실태조사」에 의한 집락영농 통계 생산
- 2007년 이후 논농업 정책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개별경영체」, 「집락경영체」에 중점을 두고 정책추진
  - 2007년 「수전경영소득안정대책」(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에서 20ha이상의 규모요건을 갖춘 조직체를 「집락경영체」로 인정하고, 집락영농에 대한 지원비

강화되면서 집락영농이 급증하게 됨. 정부의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인정농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체로서 4ha 이상이던가, 집락경영체로서 20ha가 되어야 함. 따라서 소규모 겸업농가가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요건으로서 20ha이상의 집락영농에 참여가 필수적임.

- 2011년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시책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규모요건을 철회하는 대신, 쌀에서의 전작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게 되면서, 전작을 중심으로 한 집락영농 증대하였음. 호별 소득보상제도 교부대상면적에 개별농가는 판매액에 자가소비분 「10a 공제」를 하는 반면, 집락영농에 참여할 경우 「10a 공제」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향상효과를 가져옴.

## ○ 현 정책의 방향 및 정책지원 내용

- 정책방향 : 인정농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추진, 농업경영의 법인화 촉진,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추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장래 인정농업자로 예상되는 「인정신규취농자」, 장래 법인화하여 인정농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중점적인 경영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집적·집약화의 촉진, 경영안정소득대책, 출자, 용자, 세제등 경영발전의 단계 및 경영의 상태에 따라 지원시책 추진, 또한 구조개혁의 진전사항을 파악하고, 경영발전에 필요로 하는 분석 및 검증을 실시
  -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을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정책사업과의 연계: 집락영농을 포함한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생산기반정비, 생산안정화, 부가가치 증대, 금융등 자금문제등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농정의 세부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함. 주요 정책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 개별농가의 경우 직불금 지급시 작부면적에서 집락영농이 공제자격단체로서 수도작공제제도에 가입할 경우 10a 공제효과를 받게되어 직불금을 더 받도록하고 있음.
  -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집락영농의 조직화·법인화에 필요한 농업용기계등을 도입할 경우 50% 보조지원
  - **규모확대 가산 교부금:** 집락영농을 법인화하면, 법인화후 경영규모가 법인화 전의 집락영농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에 의해 법인에 이용권 설정이 된 농지에 대하여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규모확대가산교부금을 받을 수

있음.

-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 중산간지역의 생산조건이 불리한 점을 보정하는 직불보조금 지원
- **농지·수보전관리지불교부금:** 지역공동의 농지·농업용수의 보전관리활동에 대한 지원(농업용배수로등의 보수지원)
- **6차산업융합추진사업:** 6차산업화와 관련한 신상품의 개발 사업비 및 6차산업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 **경영체육성강화자금, 농업근대화자금:** 5년내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농기계·시설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장기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
- **농업개량자금:** 5년내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생산·가공·판매 분야의 신규사업추진시 무이자 대부
-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의 교부금등을 활용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 농지 및 농기계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의 특례조치 실시(준비금의 적립액, 농지등의 취득액 가운데 교부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

## ○ 집락영농조직의 요건 및 조직화 절차

### - 집락영농의 요건

- 집락영농의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가입요건과 일치함.
- 첫째, 복수의 농가로 구성되고,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를 정할 것.
- 공동판매경리를 실시할 것: 집락영농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명인의 구좌를 개설하고, 조직에서 판매한 농산물 대금 및 교부금이 불입되고, 조직에서 구입한 자재비, 노임, 배당등이 지출될 것

### - 집락영농의 조직화 수순

- 집락의 농가와 협의회등을 통하여 직락영농의 동의를 받고 조직만들기의 협력요청 → 시정촌사무소, 지역농업재생협의회등과 상담을 통해 조직만들기에 대한 협력요청 → 조직의 운영방법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 규약을 작성 → 설립총회 개최

### - 집락영농의 법인화

- 집락영농을 법인화 할 경우 설립등기와 관련한 수속 및 전문가 상담료등 비용에 대하여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추진사업에서 1법인 당 40만엔을 지원하며, 집락영농에 대한 연수회등의 개최경비를 도도부현 협의회에 지원
- 법인의 형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사조합법인, 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함.

## 2. 집락영농의 동향과 실태

### ○ 집락영농수의 추이

- 전체 집락영농의 수는 집락영농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5년 10,063개소에서 2015년 14,852개소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 10년간 4,789개소가 늘어났는데, 특히 제도도입기인 2007년~2008년, 2010~2011년 간의 설립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효과로 판단됨.
- 집락영농이 법인화된 경영체는 2005년 646개소에서 2015년 3,622개소로 대폭증가 되었으며 전체 집락영농의 24.4%를 점하고 있음. 최근 법인화에 따른 메리트가 커지면서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 집락영농의 실태

- 집락영농의 총수입액은 3천만엔 이상이 25.4%, 1천~3천만엔이 29.0%로 나타나고 있으며, 500만엔 미만의 조직도 34.0%를 점하고 있음.
- 조직운영의 과제로서는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인재의 확보가 59%, 두 번째가 오피레이터등 종업원의 확보로서 인력의 확보를 당면과제로 들고있음
- 집락영농의 농지집적 상황을 보면, 20ha이상의 농지집적을 한 집락영농이 52%를 점하고 있으며, 10ha 미만도 25.4%를 점하고 있음.
- 집락영농의 활동내용을 보면, 전체 집락영농의 74%가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76%가 기계의 공동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51%가 방제 수확등의 농작업수탁, 58%가 작부지의 단지화등 집락내 농지이용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락내에 영농을 일괄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28%에 이르고 있음.
- 농산물의 생산상황을 보면, 주식용 쌀을 생산하고 있는 집락영농이 80%, 맥류생산 42.7%, 대두생산 45.7%, 가공용쌀 24.2%, 신규수요쌀(쌀가루용, 사료용, 바이오연료용, 짜일리지용 쌀) 23.2%임.
- 소득향상을 위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비료·농약의 사용경감 49.1%,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43.2%, 농기계의 공동이용화 및 대형화 40.4%, 경영규모 확대 38%, 농업생산 이외의 사업 25.8%임.
- 현재 농업생산 관련사업으로서는 전체 집락영농의 87%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직판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 집락영농의 유형

- 농작업의 실시상황, 농기계의 이용상황에 따라 집락영농의 타임을 구분해보면, A~G의 7개의 타임으로 구분됨. A~E 현은 경영소득안정대책에 가입한 조직으로 조직에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조직임.
- A~C 유형은 농기계를 조직에서 소유하고, 조직에서 농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유형으로 다수가 이 유형에 속해 있음.
- D~E 유형은 枝番관리조직으로 칭하는 조직(조직에서 판매를 하되, 농지소유자의 필지별로 개별관리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있음.
- F~G 유형은 농기계 공동이용만 실시하고 판매는 개별농가가 담당하는 유형으로서 경영체로서 미성숙된 타임으로 구분됨.

표 일본 집락영농조직의 유형

	경영소득안정 대책 가입	조직이 생산물 판매	농작업의 실시상황			기계의 이용상황		비고
			조직이 실시		농가개 별작업	조직소 유의 기계를 이용	개별농 가의 기계를 이용	
			특정 오퍼레 이터	전농가 공동작 업				
조직A	◎	◎	◎	×	×	◎	×	
조직B	◎	◎	×	◎	×	◎	×	
조직C	◎	◎	◎	×	×	○	○	
조직D	◎	◎	○	×	○	○	○	
조직E	◎	◎	×	×	◎	×	×	
조직F	×	×	×	○	○	○	○	
조직G	×	×	×	×	◎	◎	○	

자료: 「집락영농 전개하의 농업구조」.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4.

○ 집락영농을 통한 농업소득 비교

- 집락영농과 개별영농의 호당 평균 경영성과를 비교해 보면, 호당 평균 조수익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큰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집락영농이 개별경영에 비하여 호당 농업경영비의 26%절감, 농업노동시간은 76%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농업투하노동시간당 농업소득면에서는 233배의 소득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집락영농 VS 개별영농 농업경영지표 비교

구분	단위	집락영농(A)	개별경영(B)	(A)/(B)
호당 평균 조수익	천엔	1,113	1,114	1
호당 평균 농업경영비	천엔	819	1,109	0.74
호당 평균 농업소득	천엔	294	5	58.8
호당 평균 경영경지면적	ha	0.9	1.2	0.75
호당 농업노동시간	시간	159	662	0.24
농업투하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천엔	1,868	8	233.5

주: 개별경영 표본은 개별 경영규모 0.5~1ha 농가표본임.

자료: 「일본 농업경영통계조사」. 농림수산성. 2013.

### 3. 집락영농의 사례

#### □ 토치키현 農事組合法人そばの里まぎの

##### ○ 도찌기현과 모테기정의 농업 현황

-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후계자와 유희농지 관리문제가 심각한 상황
- 도찌기현은 이에 대응하여 집락영농 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모테기정의 경우, 대표적인 중산간지역으로 집락영농경영체 육성에 적극적임.
- 당초 소바재배 중심의 임의조직 형태로 출발, 농업체험사업 도입, 레스토랑 개설과 함께, 2개 임의조직이 합병, 법인설립이 이루어졌음.

##### ○ 집락영농법인 개요

- 메밀공동 생산조직에서 출발하여 체험농장(오너제도, 1구좌당 50평), 가공, 농가레스토랑 운영등 육차산업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간 매출액은 4천만엔이며, 80%가 레스토랑(소바 전문점)운영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소바의 재배면적은 17ha, 이모작으로 보리를 재배하고 있음. 농작업은 생산부서에서 소수의 오퍼레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판매부, 레스토랑 운영부등으로 조직되어있는데, 18명이 출자조합원 가운데, 16명이 상근종사자로 활동하고 있음.

#### □ 農事組合法人アグリファーム大桶

##### ○ 지역(도찌기현 나스가라스시) 농업 현황

- 나스가라스시는 소농 중심의 논농업 지역임.
- 관내 집락영농 법인은 두 곳이 있음.
- 농기계의 공동이용과 전작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집락영농이 전개되고 있음.

○ 오오케 농사조합법인 개요

- 10여 년 전부터 임의조직을 형성하여 집락영농을 시작함
- 수도작 30ha + 보리(전작, 16ha) + 콩(전작, 8ha)을 중심으로 집락영농 조직화, 수도육묘하우스를 활용한 야채생산 및 특별미 재배, 직판장(네트워크조직) 출하 및 농협공동출하를 중심으로 운영, 체험학습장 운영
- 수도작은 부분적인 작업공동화, 전작작물(보리 및 대두)는 소수의 오퍼레이터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계획으로서는 육묘하우스의 야채생산 및 공동육묘를 계기로 작업공동화를 강화하고, 야채의 주년재배에 의한 직판장 활성화, 블록로테이션에 의한 농지의 집적, 생력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음.

4.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한 시사점

- 일본은 집락영농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한 핵심 경영주체로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자격을 부여하고, 농업생산에서 가공·판매, 6차산업화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메뉴를 통하여 육성하고 있음.

- 특히, 「호별소득보상제도」(직불제)에서 집락영농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10a 공제 효과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서 집락영농의 설립 및 법인화를 촉진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의 정책적 위상 확립과 발전단계 및 다양한 들녘경영체의 진로에 대응한 정책추진 필요

- 일본은 집락영농의 내실화를 위하여 집락영농에 대한 통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도도부현 및 시정촌단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매년 집락영농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및 5년마다 센서스 조사를 통하여 집락영농에 대한 동향분석 실시
- 시정촌 기초지자체에서는 수전농업(水田農業) 발전대책 차원에서 관내 인정농업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집락영농 육성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논 농업의 종합대책 수립과 연계한 들녘경영체 육성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해외출장 현지협의회 결과 보고

[과제명: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방안]

## 1. 개요

- 회의 목적: 일본의 집락영농의 동향과 육성실태 조사
- 일시: 2015. 8. 25(화) 16:00~18:00
- 장소: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참석자(총 4명)
  - 연구원(1명): 박문호 연구위원
  - 한국(1명): 황재현 교수(동국대)
  - 일본 참석자(2명): 히구치 토모오 주임연구원, 오노 토오아키 상석주임연구원

## 2. 회의 내용

### ○ 정책추진 배경

- 일본의 집락영농은 원래 서일본의 중산간지대나 총검엽농가지대 등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지역에서 고령화, 겸업화에 의하여 농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지키기 위한 지역의 위기 대응」으로서 집락영농이 나타나게 됨.
- 집락영농을 통한 기대효과로서는 첫째, 농지, 농로, 수로, 저수지등 지역자원을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기능,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노동력, 자본을 결집시켜 효율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능, 셋째, 지역주민의 정주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여 생활이나 살림을 지탱하는 지역재생 및 활성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 ○ 정책의 추진경과

- 1960년대 후반 이후: 몇 개의 현에서 집락영농의 조직화를 지원
  - 소규모겸업농가지역 및 중산간지역에서 집락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조직이 설립됨

- 1990년대에 들어와 집락영농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도입
  - 1992년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신농정)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경영체」에 개별경영체와 조직경영체의 양립방향 제시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집락영농을 「과도적 존재」로서 위치 설정, 대구획포장정비로 농지집적(30%이상)의 요건으로 조직화 진행(기계설비 90% 보조), 소수 니나이테 중심의 전작수탁조직이 설립(전작지의 단지화)
  
- 2000년대 몇가지 요건을 갖춘 집락영농을 니나이테로 설정
  - 2002년 「쌀정책대강」, 2004년 「쌀 정책개혁」에 집락영농중 일원적 경리가 이루어지며, 일정기간내 법인화 하는 등의 요건을 전제로 「집락경영체」를 경영주체로 인정, 정책적 육성 도모
  - 2005년부터 「집락영농실태조사」에 의한 집락영농 통계 생산
  
- 2007년 이후 논농업 정책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개별경영체」, 「집락경영체」에 중점을 두고 정책추진
  - 2007년 「수전경영소득안정대책」(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에서 20ha이상의 규모요건을 갖춘 조직체를 「집락경영체」로 인정하고, 집락영농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집락영농이 급증하게 됨. 정부의 정책지원대상이 되는 인정농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체로서 4ha 이상이던가, 집락경영체로서 20ha가 되어야 함. 따라서 소규모 겸업농가가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요건으로서 20ha이상의 집락영농에 참여가 필수적임.
  - 2011년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시책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호별소득보상제도에서는 규모요건을 철회하는 대신, 쌀에서의 전작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게 되면서, 전작을 중심으로 한 집락영농 증대하였음. 호별 소득보상제도 교부대상면적에 개별농가는 판매액에 자가소비분 「10a 공제」를 하는 반면, 집락영농에 참여할 경우 「10a 공제」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향상효과를 가져옴.

## ○ 현 정책의 방향 및 정책지원 내용

- 정책방향 : 인정농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추진, 농업경영의 법인화 촉진, 경영의 복합화·다각화 추진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장래 인정농업자로 예상되는 「인정신규취농자」, 장래 법인화하여 인정농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중

점적인 경영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집적·집약화의 촉진, 경영안정소득대책, 출자, 용자, 세제등 경영발전의 단계 및 경영의 상태에 따라 지원시책 추진, 또한 구조개혁의 진전사항을 파악하고, 경영발전에 필요로 하는 분석 및 검증을 실시
  -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을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정책사업과의 연계: 집락영농을 포함한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생산기반정비, 생산안정화, 부가가치 증대, 금융등 자금문제등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농정의 세부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함. 주요 정책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 개별농가의 경우 직불금 지급시 작부면적에서 집락영농이 공제자격단체로서 수도작공제제도에 가입할 경우 10a 공제효과를 받게되어 직불금을 더 받도록하고 있음.
  -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집락영농의 조직화·법인화에 필요한 농업용기계등을 도입할 경우 50% 보조지원
  - **규모확대 가산 교부금:** 집락영농을 법인화하면, 법인화후 경영규모가 법인화 전의 집락영농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에 의해 법인에 이용권 설정이 된 농지에 대하여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규모확대가산교부금을 받을 수 있음.
  -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 중산간지역의 생산조건이 불리한 점을 보정하는 직불보조금 지원
  - **농지·수보전관리지불교부금:** 지역공동의 농지·농업용수의 보전관리활동에 대한 지원(농업용배수로등의 보수지원)
  - **6차산업융합추진사업:** 6차산업화와 관련한 신상품의 개발 사업비 및 6차산업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 **경영체육성강화자금, 농업근대화자금:** 5년내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농기계·시설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장기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
  - **농업개량자금:** 5년내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집락영농에 대하여 생산·가공·판매분야의 신규사업추진시 무이자 대부
  -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의 교부금등을 활용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 농지 및 농기계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의 특례조치 실시(준비금의 적립액, 농지등의 취득액 가운데 교부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

## ○ 집락영농의 전망

- 집락영농은 대규모 가족경영이나 기업적경영이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 활발하며, 그러한 지역에서는 지역내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농지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집락영농에의 기대가 큼.
- 이러한 집락영농에서 기계작업의 중요한 노동력은 정년귀농자들이 많다. 이들이 지역의 담당자 또는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집락영농을 통하여 기계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 결과, 개별농가의 경우 노동력의 여유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고령, 부녀자 노동력을 활용하여 원예작물을 도입을 가능케 하고 있음.
- 집락영농의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생산의 담당자로서의 역할, 개별경영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 농지의 황폐화를 방지하는 역할등 집락영농을 통한 수평적 조직화에서 나아가 수직적인 조직화의 방향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첫째, 경영의 고도화, 생산력의 발전, 수익성의 강화, 경영체로서 확립 및 법인화의 전개
  - 둘째, 집락연합, 구 행정단위인 촌단위의 지역영농조직화, 집락영농의 중층조직의 형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셋째, 인큐베이터 기능의 수행이다. 신규취농자등 다양한 후계자의 확보 및 육성, 담당자에게로의 농지집중을 통한 대규모경영의 실현
  - 네째, 사업체로서 활동의 자유도를 높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체로서의 발전
- 이를 위해서는 행정 및 농협의 직접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육성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